

빛나는 발걸음, 새로운 길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

수 신 수신자 참조

경 유

제 목 식품위생법 준수에 따른 식품제조·가공업 시설 기준 및 필수품목 구비 안내

1.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「식품위생법」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[별표 17]에 따라, 식품제조·가공업 시설의 위생관리 기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가. 적용 대상: 식품제조·가공업 영업주

나. 주요 개정 사항: 필수 비치 품목 추가(ATP 오염도 측정기, 온도·습도 측정 장비)

다. 점검 기간: 2026. 4. 1. ~ 2026. 6. 30.

3. 미비치 시 「식품위생법」 제101조에 따라 과태료(최대 300만원)가 부과될 수 있으니, 불임의 안내에 따라 기한 내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불임 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불임 1. 개정 법령 조문 발췌 1부.

불임 2. 필수 품목 상세 기준 및 설치 방법 1부.

불임 3.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 방법 1부. 끝.

식품의약품안전처



수신자 : 식품제조·가공업 영업주

담당부서 : 식품안전관리과

식품안전팀장 : 이진우

식품안전과장 : 한상필

전결 2026.04.01

전화번호 : 010-4305-0609

FAX : 052-229-2019

www.mfds.go.kr

44675)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(신정동, 울산광역시청)

관련 법령 조문 및 행정처분 기준

1. 관련 법령

- 「식품위생법」 제44조(영업자 준수사항) 제1항: 식품접객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,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[별표 17]: 식료품(냉장·냉동) 제조 및 유통시설의 위생관리 기준에 따라 필수 품목(디지털 기반 모니터링 체계)을 구비하여야 한다.

2.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

- 기반 법령: 「식품위생법」 제101조(과태료)
- 처분 세부 내역:

위반 사항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필수 위생 품목 미비치	과태료 100만 원	과태료 200만 원	과태료 300만 원
위생관리 기록 누락/허위	영업정지 15일	영업정지 1개월	영업취소 및 폐쇄

필수 품목 상세 규격 및 설치 방법

1. 장비별 상세 규격

• 가. ATP 오염도 측정기 (Handheld Type)

o용도: 조리 기구 및 종사자 손의 미생물 오염도를 현장에서 즉시 수치화(RLU)하여 관리.

o규격: 데이터 5,000건 이상 저장 및 PC 연동 가능 모델.

• 나. IoT 스마트 온도·습도 측정 장비

o용도: 냉장·냉동고의 온도 및 습도를 실시간 측정하여 클라우드 서버(Radionode365 등)로 전송.

o규격: 정전 및 이상 온도 발생 시 즉시 긴급 알림(전화, 문자) 기능 포함.

2. 설치 기준 및 운영 방법

•가. ATP 오염도 측정기: 교차 오염 방지 및 정밀 관리를 위해 각 제조공간(구획)마다 최소 1대 이상 비치하여야 함.

•나. IoT 스마트 온도·습도 측정 장비: 보관 온도 이탈 방지를 위해 냉동창고 내 분리된 칸(섹션)마다 최소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함.

•다. 운영 의무: 모든 측정 데이터는 실시간 로그(Log) 기록으로 유지되어야 하며, 점검 기간 (2026. 4. 1. ~ 2026. 6. 30.) 내 현장 확인에 대비하여야 함.

위생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신청서

신청인	성명(대표자)		사업자번호	
	업소명(상호)		연락처	
사업장	소재지			
환급계좌	은행명		계좌번호	
	예금주		연락처	

[신청 안내]

1. 신청 접수 시 신속성을 위하여 본 신청서를 작성 후 사진 촬영하여 사업 담당자 직통 번호(010-7506-3645)로 문자(SMS/MMS) 또는 모바일 메신저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지정된 정부 공인 업체를 통해 장비를 선구매한 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**구매 대금의 100%(전액)를 환급 지급**합니다.
3. 사업 수행 지정업체는 관련 규정 및 업체 사정에 따라 상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신청 전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현시점 기준 유효한 '지정업체 승인 정보 및 담당자 인적사항'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4. 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되며,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.

본인은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며,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신청인: (인/서명)

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

끝.